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중

1. 의결주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닭고기, 오리 부화용 수정란, 대파 및 무에 대하여 2023년 6월 30일까지, 감자칩 제조용 감자에 대하여 2023년 11월 30일까지 각각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4. 5. ~ 4. 13. 및 4.19. ~ 4.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로 한다.
별표 9 및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별표 9]

202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207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 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	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i>Gallus domesticus</i>)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207	12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	30,000톤
0207	14	절단육과 설육(屑肉)(냉동한 것으 로 한정한다)			
		1. 절단육		0	
		2. 설육(屑肉) 나. 기타		0	
1602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피·곤충			
1602	3	가금류(家禽類)로 만든 것(제0105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1602	32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i>Gallus domesticus</i>)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만든 것		0	

0407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보존처리하거나 조리 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7	1	부화용 수정란			
0407	19	기타	오리 부화용 수정란	0	10톤
0703		양파·샬롯(shallot)·마늘·리크 (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 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 한다)			
0703	90	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 소	대파	0	5,000톤
0710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찌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710	80	그 밖의 채소			
		2. 기타	대파	0	
0712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 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2	90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1. 그 밖의 채소			

		다. 파	대 파	0	
0706		당근·순무·샐러드용 비트(beetroot) · 선모(仙茅)· 셀러리액(celeriac)· 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 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 정한다)			
0706	90	기타			
		1. 무		0	수입 전량

[별표 10]

2023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701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 로 한정한다)			
0701	90	기타	감자칩 제조용	0	12,810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u>별표 1부터 별표 8까지</u> 와 같다.	----- ----- ----- <u>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u>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연락처	(044) 215 - 4433